

소방 과태료 · 벌금 **TOP 7**

기억해 주세요!



자체점검결과 미제출



소방시설 자체점검(작동, 종합) 결과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 미제출

200만원이하 과태료

피난 · 방화시설 훼손



비상구 폐쇄



물건 적치

금지



도어스토퍼 설치



도어클로저 훼손

방화문, 비상구 등을 폐쇄·훼손 또는 계단,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

300만원이하 과태료

소방안전관리 미실시



소방시설 및 피난·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미이행

300만원이하 과태료

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미실시

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변경

자격증 취득교육 및 시험 자격증 발급 선임 신고 실무 교육

한국소방안전원 통합
소방서->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('22.12.01. 시행)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 후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미신고

200만원이하 과태료

자체점검 미실시

★ 소방시설점검 ★

자체점검이란?

작동점검

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

종합점검

소방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점검

연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(작동, 종합) 미실시

**1년이하 징역
1천만원이하 벌금**

무허가 위험물 저장 · 취급



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 · 취급

**3년이하 징역
3천만원이하 벌금**

제조소등 변경허가 미신청



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·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시 변경허가 미신청

1천5백만원이하 벌금